

#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009호)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10. 2.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2025. 10. 2.

다. 상정·의결일자: 2025. 10. 20.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

#### 가. 제정이유

고성군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2) 고성군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안 제3조)
- 3) 이용 방법, 이용의 우선순위 및 운영시간(안 제4조 ~ 제7조)
- 4) 이용료와 이용료의 감면, 이용료의 반환(안 제8조 ~ 제10조)
- 5) 시설의 관리, 안전교육 및 위·수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4조)

####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가) 「국민체육진흥법」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다) 「지방자치법」

2) 예산조치: 2026년 당초예산 확보 예정

3) 합 의: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복지지원과-31324(2025. 8. 14.)호]

#### 4) 기 타

가)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5-1315호

- 예고기간: 2025. 8. 11. ~ 2025. 9. 1.(21일간)

- 예고결과: 의견 없음

나)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라)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마) 비용추계서: 붙임

###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허수은)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고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해 온 파크골프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체계 확립과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시설 이용에 대한 방법, 시설의 개방 및 이용 시간, 시설 사용료의 감면, 시설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안전하게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조문이 관련 법령과 적합성 및 적법성에 문제가 없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5. 10. 20. 수정가결

- 붙임 1.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2.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 제안서

의안번호	제3009호 관련
------	--------------

제안연월일	2025. 10. 20.
발 의 자	최두임 의원

## 1. 수정이유

고성군 파크골프장 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휴장일 등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현재 18홀 규모로 시범운영 중이나 연내 27홀로 변경 계획 후 완료 예정으로 규모에 맞게 수정함.

## 2. 수정내용

안 제6조제1항제2호 “07:00부터 18:00까지” 를 “07:00부터 17:00까지” 로 하고

안 제7조제1항제2호 “설날·추석날(연휴포함)” 을 “설날·추석날” 로 하며

안 별표 1 “18홀” 을 “27홀” 로 하고

안 별표 2 “오전 관내 2,000원 관외 5,000원과 오후” 를 삭제한다.

##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한 수정안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07:00부터 18:00까지” 를 “07:00부터 17:00까지” 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설날·추석날(연휴포함)” 을 “설날·추석날” 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p>제6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①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겨울철(11월~3월)은 <u>07:00부</u>  <u>터 18:00까지</u></p> <p>②·③ (생 략)</p> <p>제7조(휴장일) ① 파크골프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1월 1일, <u>설날·추석날(연휴포</u>  <u>합)</u></p> <p>3. (생 략)                      가.~다. (생 략)</p> <p>② (생 략)</p>	<p>제6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①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07:00부</u>  <u>터 17:00까지</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휴장일) ①                      -----.</p> <p>1. (생 략)</p> <p>2. -----<u>설날·추석날</u></p> <p>3.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현 행)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연번	명칭	위치	비고(규모)
1	고성파크골프장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521-2번지 일원	18홀
2	고성스크린 파크골프장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521-2번지	고성파크골프장 부속시설

■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수정안)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연번	명칭	위치	비고(규모)
1	고성파크골프장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521-2번지 일원	27홀
2	고성스크린 파크골프장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521-2번지	고성파크골프장 부속시설

■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현 행)

파크골프장 이용료(제8조 관련)

□ 파크골프장

구 분			이용료
이용자 (1인당)	<u>오전</u>	<u>관내</u>	2,000원
		<u>관외</u>	5,000원
	<u>오후</u>	관내	2,000원
		관외	5,000원
※ 비 고 - “관내”란 이용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말한다)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스크린 파크골프장

구 분	이용료
스크린 파크골프장	9홀당 1,000원
※ 비 고 -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9홀을 추가할 때마다 1,000원을 추가한다.	

■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수정안)

파크골프장 이용료(제8조 관련)

□ 파크골프장

구 분		이용료
이용자 (1인당)	<u>관내</u>	<u>2,000원</u>
	<u>관외</u>	<u>5,000원</u>
※ 비 고 - “관내”란 이용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말한다)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스크린 파크골프장

구 분	이용료
스크린 파크골프장	9홀당 1,000원
※ 비 고 -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9홀을 추가할 때마다 1,000원을 추가한다.	

의안번호	제3009호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5. 10. 2.

#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3009호
----------	--------

제출연월일: 2025. 10. 2.

제출자: 고성군수

## 1. 제정이유

고성군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고성군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안 제3조)
- 다. 이용 방법, 이용의 우선순위 및 운영시간(안 제4조~제7조)
- 라. 이용료와 이용료의 감면, 이용료의 반환(안 제8조~제10조)
- 마. 시설의 관리, 안전교육 및 위·수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국민체육진흥법」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3)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2026년 당초예산 확보 예정

다. 합 의: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복지지원과-31324(2025. 8. 14.)호]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5-1315호

가) 예고기간: 2025. 8. 11.~2025. 9. 1.(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붙임

4. 본 문: 붙임과 같음

##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파크골프장”이란 고성군에서 설치한 파크골프장, 스크린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이용 방법) 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 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이용기간 중 파크골프장 내에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파크골프장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5조(이용의 우선순위)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다른 이용자에 우선해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고성군체육회, 고성군장애인체육회, 체육

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제6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①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름철(4월~10월)은 06:00부터 19:00까지

2. 겨울철(11월~3월)은 07:00부터 17:0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파크골프장의 이용시간은 오전 또는 오후 중에서 어느 하나만 이용할 수 있다.

**제7조(휴장일)** ① 파크골프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2. 1월 1일, 설날·추석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파크골프장의 개수·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장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고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이용료) 파크골프장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스크린 파크골프장 이용료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과 그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감면 사유가 둘 이상 해당할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④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미 납부된 이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파크골프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파크골프장의 규모에 맞게 질서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질서관리 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이용 및 이용료의 납부 방법 안내
2.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3. 이용자의 질서 유지 등 안전사고 예방

제12조(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1. 이용의 제한
2. 입장의 거절 및 퇴장
3. 그 밖에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에 대한 적용례)** 제8조에 따른 이용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연번	명칭	위치	비고(규모)
1	고성파크골프장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521-2번지 일원	27홀
2	고성스크린 파크골프장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521-2번지	고성파크골프장 부속시설

■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파크골프장 이용료(제8조 관련)

□ 파크골프장

구 분		이용료
이용자 (1인당)	관내	2,000원
	관외	5,000원
※ 비 고 - “관내”란 이용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말한다)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스크린 파크골프장

구 분	이용료
스크린 파크골프장	9홀당 1,000원
※ 비 고 -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9홀을 추가할 때마다 1,000원을 추가한다.	

■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

파크골프장 이용료의 감면(제9조 관련)

구 분	비고
<b>전액 면제</b>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고성군체육회, 고성군장애인체육회, 체육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체육관련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고성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b>50퍼센트 감면</b>	
70세 이상 경로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가정의 가구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고성군 파크골프장 직영에 따른 시설 관리·운영 비용(안 제15조)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2026년부터 운영 예정인 고성파크골프장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계
세입	입장료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1,050,000
	소계(a)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1,050,000
세출	인건비	170,800	170,800	170,800	170,800	170,800	854,000
	일반운영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유지보수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소계(b)	230,800	230,800	230,800	230,800	230,800	1,154,500

###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계
자체재원	군비	230,800	230,800	230,800	230,800	230,800	1,154,500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1차년도)

1. 입장료: 210,000천 원
  - 파크골프장: 2천 원 × 300명 × 300일 = 180,000천 원
  - 스크린 파크골프장: 1천 원 × 100명 × 300일 = 30,000천 원
2. 인건비: 170,800천 원
  - 매표 및 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4명 × 12개월): 170,800천 원
3. 일반운영비: 30,000천 원
  - 사무관리비(청소용품, 화장지 등 각종 운영 소모품): 2,000천 원
  - 공공운영비(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 28,000천 원
4. 시설 유지보수비: 30,000천 원

작성자 : 스포츠산업과장 김 성 수

## 참고

##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가. 스포츠지도사
  - 나. 건강운동관리사
  -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1의3.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票)로서 투표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이하 생략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